

外國의 關稅制度(1)

■ 오늘날 國際社會는 自國의 經濟的利益을 최대한 確保 코자하는 世界各國의 보이지 않는 戰爭이 보다 치열 해져가고 있고, 特히 貿易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各國의 競爭과 摩擦은 貿易障壁에 대한 關心을 급증시키고 있다.

關稅는 各國의 產業保護와 財政收入 寄與를 위하여 活用되어온 政策手段이라 할 수 있고, 國家間 貿易에 있어 가장 基本的인 障壁으로서의 重要한 役割을遂行하고 있다.

本告는 財務部 關稅局에서 發刊한 資料('92政策資料/關稅)로서 우리의 관심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各國의 關稅率 體系 및 관세 관련 制度에 관하여 整理한 것 으로서 3回에 걸쳐 연재한다. ■

I. 美 國

1. 貿易 및 關稅制度 概要

가. 貿易 概況

- 世界 第1位의 貿易大國 : 輸出入基準
世界 第1位(1991年 基準)
 - 輸入 : 5,090億弗 → 世界 總 輸入
의 14.4%
 - 輸出 : 4,222億弗 → 世界 總 輸出
의 12.3%
- 美國에서의 經濟 不況은 美國의 輸入
需要를 減退시켜 世界交易增加率이
둔화됨. 반면 美國輸出은 1990年에

이어 1991年에도 계속 增大됨.

- 美國의 輸入量은 1988年 7.0%, 1990
年 3.9%로 增大하였으나 1991年에
는 오히려 1.6% 減少
- 輸出量은 1990年에 8.5% 增大하였고 1991年에도 계속 增大되어 7.3
%의 增加率을 기록
- 貿易額(輸出+輸入)의 GDP에 대한
比率은 1988年 16.2%에서 1991年
16.4%를 記錄
- 貿易收支 赤字도 1988~1990 동안 15
%減少하여 1990年에는 1,080億弗을
시현하였으며 이러한 趨勢는 1991年
에도 持續되어 868億弗을 記錄함

- 서비스交易의 黑字로 인해 經常收支赤字도 1988年 1,290億弗에서 1990年 920億弗(GDP의 2% 未滿)로 縮小됨

○ 1991年의 經常收支 赤字는 90億弗로大幅改善되었는바, 이는 주로 결프戰과 관련된 공적 移轉收入(約

〈美國의 主要 經濟指標〉

	1984	1986	1988	1990	1991
實質 GNP增加率(%)	6.6	2.8	4.4	1.0	3
雇傭 增加率(%)	4.1	2.3	2.2	0.5	△1
物價上昇率(CPI) (%)	4.3	1.9	4.0	5.3	4.3
失業率(%)	7.5	7.0	5.4	5.4	6.7
經常收支(10億弗)	△99	△145	△129	△92	△9
貿易收支(10億弗)	△113	△145	△127	△108	△87
輸出量 增加率(%)	—	7.0	21.0	8.5	7.3
輸入量 增加率(%)	—	13.2	7.0	3.9	△1.6

〈美國의 商品構造別 輸出入 比重〉

(金額 : 千萬弗, 比率 : %)

商品分野	輸出				輸入			
	'80		'90		'80		'90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식품	3,977	17.6	4,242	10.8	2,060	8.1	3,006	5.8
原材 料	1,143	5.1	1,698	4.3	642	2.5	991	1.9
원광·鑛產物	639	2.8	640	1.6	490	1.9	573	1.1
燃 料	847	3.8	1,232	3.1	8,225	32.5	6,874	13.3
非鐵金屬	511	2.3	529	1.3	771	3.0	999	1.9
鐵 鋼	324	1.4	349	0.9	815	3.2	1,068	2.1
化學製品	2,113	9.4	3,947	10.0	896	3.5	2,366	4.6
其他半加工品	1,159	5.1	1,988	5.1	1,580	6.2	3,574	6.9
發電用機械	500	2.2	1,013	2.6	190	0.8	756	1.5
其他非電氣機械	2,592	11.5	3,462	8.8	1,101	4.4	3,217	6.2
事務器機·通信裝備	1,721	7.6	5,166	13.1	1,361	5.4	6,337	12.3
電氣機械·裝備	624	2.8	1,655	4.2	447	1.8	1,969	3.8
自動車	1,674	7.4	3,255	8.3	2,694	10.6	7,851	15.2
其他輸送裝備	1,759	7.8	3,709	9.4	590	2.3	1,197	2.3
織維	376	1.7	504	1.3	254	1.0	673	1.3
衣類	126	0.6	256	0.7	694	2.7	2,698	5.2
其他消費財	1,620	7.2	3,744	9.5	1,800	7.1	5,779	11.2
總計	22,564	100.0	39,287	100.0	25,300	100.0	51,672	100.0

400億弗)으로 인한 것임.

- 美國의 主要 交易對象國은 EC, 카나다, 日本등이며 이들 國家와의 交易이 美國 全體交易의 約 50% 차지
- 1990年 아시아, 南美등 開途國에 대한 輸出은 美國 全體 輸出의 32.5%를 차지하여 1985年보다 다소

増大하였지만 1980年 水準(36.7%)에는 못미침

- 1990年 美國의 品目別 輸出을 보면 農產物 輸出의 增加는 완만(全體輸出의 約 11% 차지)하였던 반면, 事務用機械·通信器機等의 資本財와 消費財 輸出은 급속히 增加(全體輸出의 約 23% 차지)

〈主要 交易相對國의 美國 輸出入市場에서의 占有率〉

(單位 : %)

國家/地域	輸 出			輸 入		
	'80	'85	'90	'80	'85	'90
EC (12)	26.7	22.7	25.0	15.8	19.8	18.5
카나다	16.0	22.0	21.1	16.6	19.2	18.1
日本	9.4	10.4	12.4	13.0	20.0	18.0
멕시코	6.9	6.3	7.2	5.0	5.4	6.0
韓國	2.1	2.7	3.7	1.8	3.0	3.7
臺灣	2.0	2.1	2.9	2.9	4.9	4.6
濠洲	1.9	2.4	2.2	NA	0.8	0.9
싱가폴	1.4	1.6	2.0	0.8	1.2	2.0
홍콩	1.2	1.3	1.7	2.0	2.5	1.9
브라질	2.0	1.5	1.3	NA	2.3	1.7
中國	NA	1.8	1.2	0.5	1.2	3.1
사우디	NA	2.1	1.0	5.3	0.6	2.1
- 先進國	59.3	62.0	65.1	51.8	64.2	59.6
- 開途國	36.7	32.0	32.5	47.1	34.0	36.8
○ 아시아	10.8	11.2	14.2	12.6	15.8	17.0
○ 中南美	18.4	15.2	14.3	15.3	13.6	13.0
○ 中東	5.4	3.9	2.9	7.3	1.8	3.9
○ 아프리카	2.1	1.7	1.0	11.9	2.9	2.9
- 東 유럽	3.5	3.3	2.3	1.1	1.8	3.6

나. 最近 美國 關稅制度의 變化 内容

- 1989.1.1 HS 品目分類制度 導入施行
- HS 品目分類에 의한 貿易統計 發刊
- 1989年 中盤 UR協商과 관련하여 暫定的으로 일부 工產品을 包含한 49個熱帶產品에 대해 25%의 關稅引下를 단행·시행한 바 있고 一部 化學製品등에 대한 徵收猶豫(Duty Suspен-

sions)는 “'90年 關稅 및 通商法”에 의거 '92.12.31까지 延長措置 하였음.

2. 關稅率 構造

가. 關稅率 體系

- 美國의 關稅率體系는 크게 MFN稅率인 一般稅率과 特別稅率로 나누어 짐

- 一般稅率(General rates) : MFN稅率
※ 現在 GATT締約國中 2個國(쿠바, 루마니아)만이 MFN대우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GATT協定 非適用에 관한 GATT 35條 원용)

- 特別稅率(Special rates)

- i) 特惠稅率 : GSP, 兩者間 自由貿易協定 등에 의거한 特惠稅率
- ii) 差別稅率 : 아프가니스탄, 쿠바, 루마니아, 베트남등 MFN대우가 거부된 特定國家에 적용되는 差別稅率

※ MFN稅率과 差別稅率間의 차이
가 큼 : 대부분의 品目의 경우 30% ~ 40% Point 차이가 있음

(例) 완 구 [MFN稅率 : 無稅 또는 (toys) 12% 未滿
差別稅率 : 대개 70%]

4. 關稅率 形態

- 美國의 HS 關稅率表에 의하면 總 9,121 個 品目中 17%가 無稅品目이고 69%

가 從價稅 適用 品目이며 從量稅 適用 對象品目은 8%임

〈無稅, 從價稅, 從量稅 品目의 比重〉

(%)

	品目數	基準	輸入額基準(1989)
無 稅	17		19
從 價 稅	69		67
從 量 稅	8		13
複 合 關 稅 等	6		1

- 從量稅는 대부분 農產物에 적용되며 從量稅 및 從價稅가 동시에 適用되는 複合關稅(compounding duties)는 대개 工產品에 적용되어지고 있음.
- 農產物 輸入의 38%, 工產品 輸入의 11%가 從量稅 적용대상品目이며 農產物의 경우 從量稅 適用 比率은 加工品이 原料 및 半製品보다 큼
- 品目別로는 飲料, 담배, 動物性製品, 油菜, 燃料등이 輸入比重이 큰 從量稅 品目임

〈美國의 關稅率 形態〉

(1991年 基準)

	總 品 目		農 產 物		工 產 品	
	品目數	比重(%)	品目數	比重(%)	品目數	比重(%)
總 計	9,121	100	1,311	100	7,810	100
(1) 無 稅 品 目 (讓 許)	1,553	17	307	23	1,246	16
(2) 無 稅 品 目 (非讓許)	29	-	13	1	16	-
(3) 有 稅 品 目	7,539	83	991	76	6,548	84
從 價 稅	6,309	69	468	36	5,841	75
從 量 稅	685	8	496	38	189	2
綜 合 稅	494	5	20	2	474	6
其 他	51	1	7	1	44	1

다. 平均 關稅率

- 美國의 單純平均 關稅率(1991年 實行稅率 기준)은 7.0%이며 品目別로는 工產品이 6.7%, 農產物이 8.6%임.
- 美國은 수개 品目을 제외하고는 大부분 GATT에 讓許되어 있으므로 實行 關稅率과 譲許 關稅率間에는 큰 차이가 없음
- UR協商 以前 美國 平均 譲許稅率(單純平均基準)은 7.1%로 平均 實行 關稅率 7.0%과 거의 비슷한 水準임.
- 全品目的 98%가 GATT에 譲許되어 있으며 기존 稅率보다 높게 譲許된 品目은 總品目的 1.5%에 불과

〈美國의 實行稅率 現況 및 韓國과의 比較〉
('92基準, 單位: %)

	全品目 ¹⁾	工產品	農產品
單純平均 ²⁾	7.0(7.1)	6.7(6.8)	8.6(8.8)
加重平均	5.1	3.0	5.1
韓國 ³⁾	10.1	8.4	18.5

- * 1) 石油除外 2) ()내 숫자는 UR協商 以前 GATT讓許稅率임
- 3) 單純平均

라. 關稅率 範圍

〈美國의 關稅率 範圍 및 韓國과의 比較〉
('91品目數 基準, 單位: %)

關稅率	美 國	韓 國
10% 未滿	81	41
10.1~20%	15	53
20% 以上	4	6

- 農產物의 關稅率 範圍가 工產品보다 高음

- 關稅率이 20%를 넘는 品目的 比率은 工產品의 경우 總品目的 4%, 農產物의 경우는 總品目的 6%임
- 高關稅 品目은 특히 從量稅 適用 品目에 高음
- 從量稅를 從價稅로 환산해 보면, 일부 담배製造品의 關稅率은 1,775%, 非製品 담배는 537%, 코코아는 337%, 일부 시계는 151%, 일부 飲料는 98%임

마. 加工度別 稅率隔差(Tariff escalation)

- 農產物의 경우 加工品의 實行 關稅率은 1次 產品의 3배 이상이고 工產品의 경우 完製品의 實行 關稅率은 原資材보다 7배 이상임
- Tariff escalation이 심한 分野는 가죽, 고무, 纖維 및 衣類, 鐵產品, 鐵石 및 金屬, 食品, 酪農品, 水產物 등 주로 開途國의 輸出關心 分野임

3. 關稅讓許 現況

- 現行 譲許範圍: 品目數 基準 98%, 輸入額 基準 99%
- 農產物의 譲許比重이 工產品보다 낮음
 - 品目數 基準으로 農產物의 90.7%, 工產品의 99.5%를 譲許
- 農產物의 경우 原料의 譲許比率이 半製品이나 完製品보다 낮음
 - 原料의 경우, 品目數 기준으로 87%, 輸入額 기준으로 82%가 譲許
- 특히 水產物은 상대적으로 譲許比率이 낮음
 - 輸入額 기준 67% 譲許
- UR協商에서의 譲許計劃(美國의 Initial Reduction Proposal에 依據)

- 農產物·工產品 모두 全 品目으로 讓
許範圍 擴大

<UR協商前後 讓許範圍 比較>

(單位 : %)

	品目數基準		輸入額基準	
	UR 前	UR 後	UR 前	UR 後
農 產 物	90.7	100	93.0	100
工 產 品	99.5	100	99.7	100
全 體	98.2	100	99.3	100

4. 關稅特惠制度

가. 自由貿易協定(FTA)

- 美國 - 이스라엘 自由貿易協定
 - 1995年1月까지 相互 關稅撤廢
- 美國 - 카나다 自由貿易協定
 - 1989年1月부터 10년내(1998.1.1)에
相互 關稅撤廢
- 카나다, 멕시코와 北美自由貿易協定
(NAFTA) 締結 推進
 - 現在 美 議會에서 審議中

나. 一方的(non-reciprocal) 關稅特惠

- “1983年 카리브해 연안 經濟回復法
(Caribbean Basin Economy Recovery
Act of 1983)”
 - 24個 카리브해 沿岸國家로부터 輸
入되는 物品에 대해 關稅撤廢
 - 단, 纖維 및 衣類, 石油 및 石油類
製品, 신발, 賽藏된 참치, 일부 가죽
製品, 時計 및 時計附屬品은 제외
- “1991年 안데안 貿易特惠法”(The An-
dean Trade Preference Act of 1991)
 - 議會는 현재 안데안 4個國(볼리비
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에
關稅特惠를 賦與하는 방안 고려
 - 特惠品目은 6,100餘個 品目에 이를
展望
 - 開途國 關心品目(纖維 및 衣類, 신
발, 가죽製品등)에 대해서는 關稅
特惠 배제

다. 一般特惠關稅制度(GSP)

- “1984貿易 및 關稅法”에 근거하고 있
으며 GSP 對象 品目에 대해서는 無

<美國의 關稅特惠制度>

特 惠 制 度	對 象 國 家	原 則 및 內 容
自由貿易協定	카나다, 이스라엘	相互主義에 입각 모든 品目의 關稅 撤廢
카리브해 經濟 回復法	카리브해 연안 國家(24個國)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全品目에 대해 非相互主 義 原則에 입각, 일방적으로 輸入關稅 撤廢
G S P	134個 開途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P受惠品目의 경우 無稅 - 매년 GSP制度를 검토 受惠品目 및 受惠國 調整 - 現在 GSP受惠品目은 4,284個 品目으로 全品目 의 약 50%에 해당 - 韓國, 臺灣, 싱가풀, 홍콩이 1989年부터 受惠對 象國에서 卒業

稅 適用

- 每年 GSP 制度를 檢討하여 GSP 受惠對象品目 및 受惠國家 調整
- 現在 134個 開途國에 受惠資格 認定, 4,284個 品目 適用
 - 다만, 纖維 및 衣類, 一部 時計, 輸入에 민감한 電子製品, 유리製品 및 半製品, 鐵鋼製品은 제외
 - 1989부터 아시아 NIEs(韓國, 홍콩, 싱가풀, 타이완)를 GSP受惠對象에서除外
 - '90 主要 GSP受惠國: 멕시코, 말레이지아, 泰國, 브라질

5. 關稅上 輸入被害 舊題制度

가. 儲平防止關稅

- 年度別 儲平調查 件數를 보면 1989/90 年에 다소 減少하였으나 1990/91年에 다시 增加하고 있음
- 美國의 반dump制度 運營과 關聯된 다수의 紛爭이 儲平防止協約(The Anti-Dumping Code)下의 紛爭解決節次에 따라 GATT에 提訴되어 雙務間의 協議가 進行中이거나 GATT패널에서 檢討되고 있음

〈儲平調查 및 儲平防止關稅 賦課 現況〉 (單位: 件)

年 度	'88/'89	'89/'90	'90/'91
調 査	62	27	57
關稅賦課	27	17	19

- 최근 儲平調查 및 關稅賦課實態는 아래表과 같음

〈輸入國別 儲平 調查件數(1989.7~1991.6)〉

(單位: 件)

國 別	中國	日本	獨逸	英國	臺灣	韓 國
調查件數	15	7	6	4	4	3

〈輸入國別 儲平防止關稅 賦課件數(1989.7~1991.6)〉

(單位: 件)

國 別	中國	日本	韓 國	臺 湾	카나다	멕시코
賦課件數	8	8	5	4	2	2

- '89.7~'90.12간 儲平 調查件數는 대개가 化學製品, 纖維, 機械類 및 電子製品이 주종을 이루고 노르웨이산 연어만이 유일한 非工產品임

- 同期間中 輸出自律規制協定(VRAs)의 締結로 鐵鋼(Steel)에 대한 儲平조사는 없었음
 - 輸出自律規制 協定의 對象品目은 주로 鋼(Steel), 機械工具, 自動車, 石油, 肉類 등임
 - 總輸入에서 VRAs對象 品目의 輸入이 차지하는 比重은 '88年 9.5%, '89年 9.3%, '90年 8.8%임

나. 補助金 · 相計關稅

- 美 現行法上 補助金 支給 사실만 인정되면 自動的으로 相計關稅調查 可能
- 相計關稅調查 쟈수 件數 및 相計關稅賦課措置가 1988年 이후 減少되는 趨勢임

〈相計關稅 運用現況〉

(單位: 件)

年 度	'88/'89	'89/'90	'90/'91
調 査	16	6	5
暫定措置	9	4	1
關稅賦課	11	4	2

- 1989.7이후 새로 착수된 相計關稅 調查對象品目은 아르헨티나의 가죽, 브라질의 실리콘 金屬, 노르웨이의 연어, 싱가폴의 C.A.S.E. 소프트웨어 製品, 우루과이의 가죽의류 등임
- GATT는 패널報告書에서 카나다產 돼지고기 輸入과 關聯된 相計關稅措置가 GATT上의 關聯規定과 일치되지 않게 賦課되었다고 결정한 바 있음

라.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

- GATT 19條와 1974年 美 通商法 第201條의 도피조항(escape clause)이 緊急輸入制限措置의 發動根據임
- 1989年 9月以後 美國은 緊急輸入制限措置를 實行하지 않았음
 - 一部 鐵鋼(steel)에 대한 緊急輸入制限措置는 1989.9.30 終了
 - 鐵鋼에 관한 緊急輸入制限措置는 鐵鋼에 대한 輸出自律規制協定(VRAs)으로 대체되었으며, 다시 1989年 鐵鋼貿易 自由化計劃(The Steel Trade Liberalization Program)에 包含됨

6. 其 他

가. 關稅特惠(Tariff concession)

- 美國의 關稅率表 第98類는 美國이 輸出하여 再搬入하는 物品에 대한 關稅特惠 規定
- 同 制度는 部品을 供給하는 國內會社 와 同部品을 海外에서 組立하는 外國會社間의 共同生產을 增進하기 위한 것임
 - 美國으로부터의 部品 輸出과 美國으로의 組立品 輸入을 增大하기 위한 制度

- 同 物品에 대해서는 總 價值가 아닌 海外에서 이루어진 附加價值를 基準으로 關稅가 賦課됨
(關稅評價基準：總價值 - 美國產 部品費用)
- 國別로는 카나다, 日本, 멕시코가 同 規定에 의한 輸入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品目別로는 自動車(61%), 半導體(7%), 自動車部品 및 기관차(6%)가 同 規定에 의한 輸入의 주요 品目임

나. 割當關稅(Tariff quota)

- 설당의 輸入을 위해 종전의 輸入쿼타制度를 대신하여 割當關稅制度가 1990年에 導入됨
- 割當關稅制度는 1989年 GATT패널에서 GATT 原則에 위배되는 것으로 決定된 바 있음
- 對象品目：일부 참치, 일부 청을리브, 일부 우유 및 크림등

다. 輸入賦課金

1) 稅關使用料(Customs user fee)

- 1988年 2月 GATT의 패널보고서 채택에 따라 1991.9.30까지 稅關使用料 徵收를 위해 새로운 法規定制定
- 稅關使用料 徵收는 『1990年 綜合貿易法(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依據 1995.9.30까지 연장
- 稅關使用料率 : 0.17%(最低使用料 21\$, 最大使用料 400\$)
- 同 手數料로부터 免除되는 輸入
 - 카리브해 經濟回復法(CBERA)에 의해 카리브해 沿岸國家로부터 輸入되는 物品

- 最貧開途國으로부터 輸入되는 物品
 - 關稅特惠 對象 輸入物品
- 2) 其他 賦課金(Other levies and charges)
- 港口의 運營 및 管理를 위한 費用에 충당하기 위한 港口管理手數料(Harbour Maintenance Fee)가 1991.1月에 引上
 - 貨物金額의 0.04%→0.125%

라. 原產地 規定(Rules of origin)

- 自由貿易協定이 GSP 制度등의 原產地規定이 서로 상이
 - 國內 附加價值比率에 관한 규정이 GSP制度, 美·카나다 自由貿易協定, 카리브해 經濟回復法, MFA 織維協定間에 서로 다름
- 美國 “1990年 關稅 및 貿易法”上의 GSP관련 規定을 改正하여 原產地 요건을 카리브해 經濟回復法에 規定된 요건과 유사하게 만들었음
 - 1990年에 改正된 GSP制度는 原產地 요건으로 당해 受惠國에서 賦課된 價值가 同 製品 總價值의 35% 이상이 되어야 GSP受惠資格 賦與

7. 觀察 및 評價

- 美國의 平均關稅率 水準은 我國에 비해 상당히 낮고(單純平均稅率: 7%) 대다수 品目이 GATT에 讓許되어 있으나 開途國 關心品目인 纖維 및 衣類, 가죽, 고무, 신발 등은 高關稅를 維持하고 있으며 加工度別 稅率隔差도 심함
- 특히 일부 農產物(담배, 코코아등)의 경우, 從量稅를 적용함으로써 實質적으로 높은 關稅障壁을 쌓아 國內 同種商品의 保護를 극대화하고 있음

- 美國產 部品 輸出과 海外에서의 組立生產을 增大시키기 위해 美國關稅率表 第98類에 規定된 特定物品에 대해서는 關稅評價 金額을 낮추어 海外에서 이루어진 附加價值(=總價值 - 美國產 部品費用)를 기준으로 關稅 賦課
- 카나다, 이스라엘 등과 自由貿易協定을締結, 同國으로부터의 輸入物品에 대한 關稅를 撤廢함으로써 經濟協力 增大를 圖謀하고 있으며, 더우기 멕시코·카나다와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締結을 推進함으로써 地域主義을 強化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我國 商品의 北美市場 進出에 影響
- 덤핑防止 關稅 및 相計 關稅措置와 輸出自律規制協定(VRAs)
 - 美國은 鐵鋼(steel)등의 민감품목 輸入에 대해 덤핑防止 關稅措置나 相計 關稅措置의 발동 대신 상대국과 輸出自律規制協定(VRAs)의 締結을 통해 문제 해결 시도
 - 이는 현재 進行中인 UR協商에서 先進國의 덤핑 防止 및 相計 關稅賦課措置 남용을 억제하려는 開途國들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음
 - 그러나 最近 多者間 鐵鋼協商(MSA)의 결렬 이후 鐵鋼輸入에 대한 덤핑 提訴가 急增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 貿易摩擦이 再燃되고 있음

II. 日 本

1. 貿易 및 關稅制度 概要

가. 貿易概況

- 貿易規模: 世界 商品交易에 있어 3位國家('91基準)

〈商品構造別 輸出入 比重〉

(金額: 千萬弗, 比率: %)

商品分野	輸出				輸入			
	'80		'90		'80		'90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食 品	170	1.3	171	0.6	1,688	12.0	3,400	14.5
原 材 料	122	0.9	159	0.6	1,303	9.3	1,646	7.0
원광·鑛產物	25	0.2	36	0.1	966	6.9	1,100	4.7
燃 料	50	0.4	127	0.4	7,005	49.8	5,745	24.5
非 鐵 金 屬	179	1.4	223	0.8	436	3.1	976	4.2
鐵 鋼	1,545	11.9	1,252	4.4	89	0.6	456	1.9
化 學 製 品	665	5.1	1,578	5.5	595	0.4	1,522	6.5
其 他 半 加 工 品	884	6.8	1,368	4.8	271	1.9	1,108	4.7
發電用機械	168	1.3	349	1.2	52	0.4	179	0.8
其他非電氣機械	1,341	10.3	3,588	12.5	227	1.6	735	3.1
事務器機·通信裝備	1,798	13.9	6,701	23.4	221	1.6	1,126	4.8
電氣機械·裝備	613	4.7	1,678	5.8	98	0.7	408	1.7
自 動 車	2,610	20.1	6,623	23.1	65	0.5	732	3.1
其 他 輸 送 裝 備	1,057	8.1	1,354	4.7	176	1.3	426	1.8
纖 維	512	3.9	586	2.0	166	1.2	411	1.8
衣 類	49	0.4	57	0.2	154	1.1	874	3.7
其 他 消 費 財	1,032	8.0	2,380	8.3	389	2.8	2,021	8.6
總 計	12,981	100	28,695	100	14,053	100	23,480	100

〈日本の貿易相對國 比重〉

(金額: 億弗, 比率: %)

對象國/圈	輸出				輸入				
	'80		'90		對象國/圈		'80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世界全體	1,298	100	2,869	100	世界全體	1,405	100	2,348	100
圈域別					圈域別				
아시아	410	31.6	982	34.2	아시아	448	31.9	824	35.1
북미	342	26.3	977	34.1	北美	292	20.8	613	26.1
西유럽	218	16.8	637	22.2	西유럽	104	7.4	427	18.2
中南美	77	5.9	72	2.5	中東	439	31.2	311	13.2
中東	130	10.0	91	3.2	中南美	57	4.1	94	4.0
아프리카	64	4.9	43	1.5	中·東歐/소련	21	1.5	40	1.7
中·東歐/소련	36	2.8	33	1.2	아프리카	45	3.2	38	1.6

對象國/圈	輸出				對象國/圈	輸入				
	'80		'90			'80		'90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主要國別					主要國別					
美國	317	24.4	909	31.7	美國	245	17.4	528	22.5	
獨逸	58	4.5	178	6.2	인도네시아	132	9.4	127	5.4	
韓國	54	4.2	175	6.1	濠洲	70	5.0	124	5.3	
臺灣	51	3.9	154	5.4	中國	43	3.1	121	5.2	
香港	48	3.7	131	4.6	韓國	30	2.1	117	5.0	
英國	38	2.9	108	3.8	獨逸	25	1.8	115	4.9	
싱가폴	39	3.0	107	3.7	사우디아라비아	195	13.9	105	4.5	
泰國	19	1.5	91	3.2	中國	82	5.8	91	3.9	
濠洲	34	2.6	69	2.4	臺灣	23	1.6	85	3.6	
카나다	24	1.8	67	2.3	카나다	47	3.3	84	3.6	

〈日本의 貿易 增加率 推移〉

(單位 : %)

		'75~'84	'85	'87	'89	'90	'91
金額	輸出	13.2	4.4	9.7	3.4	5.0	9.5
基準	輸入	10.0	△4.2	18.4	11.9	12.2	0.7
物量	輸出	8.7	4.9	0.4	5.0	NA	NA
基準	輸入	3.6	0.0	9.0	8.3	NA	NA

- 輸出 : 3,150億 \$ → 世界 總輸出의 8.9%
- 輸入 : 2,360億 \$ → 世界 總輸入의 6.5%
- 貿易依存度는 GATT會員國中 가장 낮은 水準에 속함.
- GDP對比 商品交易 比重('90) : 17.6%
- 輸入比重 : 7.9% → 先進國中 가장 낮음
- 輸出比重 : 9.7% → 先進國中 美國을 除外하고는 가장 낮음
- 이는 廣範한 國內供給能力, 主要交易 相對國과의 地理的 隔差, 언어장벽 등 多樣한 要因이 作用한 結果임
- 그러나 日本經濟의 繁榮에 있어 貿易의 重要度는 이러한 數值가 나타내는 것 보다 훨씬 큼.

○ 燃料·原材料 賦存 缺乏으로 인해 日本經濟는 高度로 輸入依存의이며, 工產品 輸出은 最近까지 高速 經濟成長 뒷받침이 되어 왔음.

나. 關稅制度

- '88. 1. 1 HS導入
- 大部分 品目은 CCCN體制에서의 稅率을 그대로 유지
- 他 品目과의 統合으로 關稅率이 引上되어 輸入에 큰 影響을 끼치게 될 21個 品目은 종전 稅率水準으로 關稅率을 引下
- 日本의 關稅收入 : 8,510億엔 ('88)
- 政府 總 財政收入의 1.6%相當

2. 關稅率體系

가. 關係法令

- 關稅法(The Customs Law)
 - 關稅行政의 基本法律
 - 關稅의 決定·納付, 輸出入 通關節 次等을 規律
- 關稅定率法(The Customs Tariff Law)
 - 評價, 減免, 還給, 優惠防止關稅, 輸入禁止 등을 規律
 - 關稅率表가 附屬되어 있음.
- 關稅暫定措置法(The Temporary Tariff Measures Law)
 - 關稅率·減免·還給 등과 관련하여 關稅定率法에 대한例外를 規定·產業 및 經濟與件의 短期的 變化에 대응
 - GSP등 國際協定 關聯事項을 規律

나. 關稅率의 種類 및 適用順位

- 種類
 - 法定稅率(Statutory Rates)
 - 基本稅率(General Rates) → 關稅定率法에 의하여 規定
 - 特惠稅率(Preferential Rates)
 - 暫定稅率(Temporary Rates) → 關稅暫定措置法에 의하여 規定
 - 協定稅率(Conventional Rates)
 - GATT讓許稅率 → GATT / Protocol에 의거
- 適用順位
 - 協定稅率의 適用
 - 協定稅率이 法定稅率보다 낮은 경우
 - 法定稅率의 適用
 - 法定稅率이 協定稅率보다 낮거나 協定稅率이 없는 경우
 - 法定稅率間 적용순위

① 特惠稅率(GSP) : 受惠對象國에 한하여 基本·暫定稅率에 우선하여 適用

② 暫定稅率 : 基本稅率에 우선하여 適用

③ 基本稅率 : 가장 後 順位로 適用

다. 關稅率의 形態

- 종가세 및 종량세
 - 大部分 종가세 賦課
 - 종량세 賦課對象: 全體品目의 1.5% 해당
 - 主要 對象品目: 石油, 動·植物性油脂, 설탕, 酒類等
 - 關稅收入에 있어서는 27.3%相當 ('88基準)
- 季節關稅
 - 對象品目: 바나나, 오렌지, 자몽, 포도
 - 稅率水準
 - Out-of-season: 13~40%
 - In-season: 20~50%

3. 關稅讓許

- 現在 品目數 基準 91%, 輸入額 基準 83% 該當品目을 讓許
 - 이는 여타 先進國에 비하여 낮은 水準임
- UR協商에서는 許範圍를 品目數 基準으로 96% 水準으로 擴大하는 許計劃을 提出

〈分野別 許範圍〉

(單位: %)

	品目數 基準		輸入額 基準	
	UR前	UR後	UR前	UR後
農產物	63	86	66	NA
工產品	97	98	89	91
全體	91	96	83	NA

4. 關稅率 水準

- 平均稅率

(單位 : %)

區 分	工 產 品		農 產 物	
	單純平均	加重平均	單純平均	加重平均
讓 許 稅 率	6.7	2.8	14.7	13.3
實 行 稅 率*	5.3	1.9	12.1	6.6

* 實行稅率은 '89년 基準임

○ 農產物

- 平均 關稅率은 相對的으로 높은 水準이며 讓許範圍도 较음
- 그러나 최근相當數 農產物의 關稅를 引下·撤廢하는 일련의 市場開放措置 實施(UR協商 열대산 품 Offer의 早期 施行 : '89年 123個 品目 關稅引下)

○ 工產品

- 東京라운드 이후 工產品 關稅率은 大部分 先進國보다 낮은 水準
- 80年代 後半 以後 市場開放措置 實施로 關稅率은 계속 引下되어 왔음

- 關稅率表 輸入比重*

(單位 : %)

	全 體	農 產 物	工 產 品
Free	44	33	47
0.1~5	24	28	23
5.1~10	9	14	8
10.1~15	4	6	3
15.1~20	2	4	1
20.1 以上	2	9	1
不 特 定	15	6	17
計	100	100	100

* '88年 基準 數值임

- 高關稅分野

- 工產品 : 가죽, 목재 판넬, 경질 織維織物, 衣類·衣類 裝飾品, 신발, 旅行用具등

- 農產物 : 과일, 커피, 차의 추출물, 초코렛, 설탕, 과자, 밀가루, 음료, 酒類, 낙농제품등

〈分野別 平均税率〉

('89基準, %)

	法定税率		實行税率	
	單純平均	加重平均	單純平均	加重平均
工 品	6.7	2.8	5.3	1.9
가죽·毛皮	12.5	4.6	13.9	4.0
고 무	2.8	0.7	1.9	0.6
木材·코르크	5.5	0.5	4.1	0.3
펄프·종이·판지	3.2	2.1	2.5	0.9
織 維	10.3	6.1	9.0	5.1
礦物性 生產品·肥料	2.6	2.0	1.9	1.1
귀석·貴金屬	4.4	1.9	3.1	0.8
원광·金屬	4.9	1.5	3.5	1.4
石炭·天然가스	2.6	0.2	2.2	0.2
化學製品	5.2	4.6	4.2	3.8
非電氣機械	3.7	3.7	1.8	1.4
電氣機械·裝備	3.2	2.6	0.8	0.4
輸送裝備	3.4	2.1	1.6	1.5
專門科學用具, 寫真·光學器機,	3.5	2.5	1.6	1.0
時計				
신발, 旅行用具	24.2	16.5	26.9	15.6
寫真用·映畫用 材料	4.1	4.1	3.7	3.8
家 具	4.7	4.8	3.4	3.6
樂器, 音響記錄·再生器機	3.5	1.8	1.5	0.8
玩 具	4.1	2.0	3.2	1.4
藝術品·蒐集品	0.0	0.0	0.0	0.0
武器·銃砲彈	13.3	18.4	9.4	12.0
事務用品·文具	4.6	4.8	3.6	3.8
其 他	5.6	3.9	4.2	3.3
農 產 物	14.7	13.3	12.1	6.6
食料品	19.5	17.3	16.8	11.7
穀物	9.7	8.2	2.3	0.2
動物·動物性 生產品	11.2	16.0	8.8	14.8
油菜·油脂 同 製品	4.8	0.4	4.3	0.3
切花·食物·채소	3.5	1.1	2.9	0.9
飲料·酒類	27.6	25.6	23.7	20.0
낙농제품	35.5	38.2	25.5	25.7
어류·감각류 同 製品	8.7	5.9	7.7	5.8
담 배	27.7	65.1	5.2	0.0
其他(動物性)	1.2	0.8	0.9	0.2
其他(植物性)	3.4	0.8	3.6	0.7

5. 加工度別 稅率隔差 (Tariff Escalation)

- 農產物·工產品 모두 광범위한 分野에 걸쳐 基礎產品·半加工品間에 가공도별 稅率隔差 存在

〈加工度別 稅率水準 및 輸入比重〉

(單位 : %)

	平均 稅率 *		輸入比重	
	'86	'89	'86	'88
農產物全體	9.7	6.6(12.1)	100	100
基礎產品	3.7	3.0(5.6)	71.7	65.4
半加工製品	54.3	10.6(19.2)	4.1	2.9
加工製品	17.9	12.6(16.5)	24.2	31.7
工產品全體	1.9	1.9(5.3)	100	100
原材 料	0.1	0.1(0.9)	38.6	30.7
半加工製品	2.8	2.8(5.9)	24.6	26.6
最 終 製 品	2.7	2.4(5.4)	36.8	42.7

* ()내는 단순평균, 기타 가중평균임

- 가공도별 稅率隔差는 工產品보다 農產物에 있어 더 急激한 構造를 이루고 있음.
- 自給率이 100%에 가까운 品目에서 특히 현저함.
 - 가죽, 신발, 목제품, 종이, 纖維·衣類, 鐵石·金屬類 一部
- '86以後 工產品 Tariff Escalation 緩和를 위한 일련의 關稅引下 措置 實施
- 市場接近 改善計劃 및 '90輸入擴大計劃등

6. 特惠關稅制度

가. 一般特惠關稅制度(GSP)

- '71年부터 導入, 10年 單位로 施行

- 對象國 : 130個國 및 25介 關稅領域
 - 韓國, 臺灣, 中國, 브라질, 인도네시아, 싱가폴, 필리핀등
- 對象品目 및 稅率
 - 工產品 : HS 4單位 893個中 866個
 - 適用稅率 : 原則的으로 無稅
(例外 : selected products → MFN 稅率의 1/2 引下)
 - 對象品目的 約 2/1은 ceiling quota 適用
 - 農產物 : HS 4單位 201個中 77個
 - 適用稅率 : 無稅等 多樣
 - ceiling quota는 없음
- escape clause
 - 必要時 GSP適用 정지 條項 設置

- 適用 可能品目：農產物 全體 및 工產品中 ceiling quota가 없는 品目
- 最貧開途國에 대한 特惠
 - 모든 GSP 對象品目에 대하여 無稅適用 및 ceiling quota 適用 배제
 - 適用對象國：38個國
- GSP의 수혜 비중('90基準)
 - GSP 對象輸入額：230億弗
 - GSP수혜 對象國으로부터의 關稅賦課 對象 輸入中 29.3%
 - GSP 實際受惠 輸入額：110億弗(工產品 86億弗, 農產物 24億弗)
 - GSP 對象 輸入의 48%, 日本의 總 輸入의 4.6%에 해당
 - GSP 對象 輸入과 實제수혜 輸入額의 불일치는 ceiling 등 각종 制約要因에 의한 適用 배제 및 수혜대상국의 行政上 미숙으로 인한 適用要件 未洽 등으로 인한 것임.

〈GSP 受惠 比重('90)〉

(金額：百萬弗, 比重：%)

區 分		農產物	工產品	全體
①	日本의 總 輸入額	36,244	203,065	239,309
②	①中 GSP 수혜國으로부터의 總 輸入額	14,574	101,672	116,246
③	②中 關稅賦課 對象輸入額	11,954	66,562	78,516
④	③中 GSP對象 品目의 輸入額	2,670	20,374	23,044
⑤	④中 實際 수혜수입액	2,421	8,580	11,001
⑥	GSP 수혜國으로부터의 關稅賦課對象輸入中 GSP對象 輸入比重(④/③)	22.3	30.6	29.3
⑦	GSP 對象 輸入中 實際 수혜비중(⑤/④)	90.7	42.1	47.7

나. 其 他

- 日本은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기타 地域間 特惠協定을 締結하지 않고 있음.
- 배타적 經濟圈 形成에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전통적으로 地域協定에 비판적 立場
- 아시아·태평양 地域에서 經濟協力 및 投資등을 促進하고 있으나 特惠貿易의 惠澤은 부여하지 않음.

7. 關稅評價 · 通關 및 原產地 規定

가. 關稅評價

- 日本은 GATT/關稅評價協約의 서명국임.
- 同 協約에 맞춰 관세정률법 改正
- 基本的으로 輸入商品의 去來價格(transaction value)을 課稅價格으로 使用
- 輸入 輸送費用은 課稅價格에 包含

나. 通關

- 1982年에 통관절차 간소화 措置 實施
 - 평균 통관 所要時間이 2시간으로 短縮됨.(종전보다 1/2短縮)
- 1990年 美·日 構造調整協議 中間報告書를 통하여 통관절차의 추가改善 을 공표

다. 原產地 規定

- GATT 讓許稅率 및 GSP 稅率 適用을 위하여 原產地와 關聯한 두 가지 基本的 原則이 있음.
 - GATT 讓許稅率
 - 輸入商品의 전적으로 1個國에서 生產된 경우에는 당해국가
 - 輸入商品의 生產過程이 2個國 이상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 운 必須的 特질을 부여한 최종적 인 實質的 變形이 當該國家에서 가하여진 國家
 - GSP稅率
 - 一般的으로 GATT 讓許稅率의 適用基準과 同一
 - 제3국 경유 輸入 및 其他 特殊한 경우에는 부가적 조건 충족 필요

8. 關稅上 輸入被害 救濟制度

가.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

- 關稅法 제9-2조에서 GATT 19조에 의거한 緊急輸入制限措置를 規定
 - 讓許品目의 適用稅率을 一定範圍 내에서 引上하거나 讓許를 수정· 철회토록 함.
 - 數量制限·市場秩序維持協定(OMA) 등은 同 法에 規定되어 있지 않음.

나. 덤핑防止關稅 및 補助金 相計關稅

- 日本은 GATT/덤핑防止協約 및 보조금·상계관세 協約의 서명국임.
 - 協約에 맞춰 '80年에 관세정률법을 改正, 法的 根據를 整備
 - '86년에 상계관세 및 덤핑방지관세와 關聯한 節次規程을 새로 採擇
 - 대장성이 통산성 및 기타 部處와 協議, 調査·判定
- 제소·조사 事例는 있으나 實제로 賦課된 경우는 없음.
- 상대국의 輸出自律規制 약속 및 支援措置 등에 따라 제소 취하

9. 觀察 및 評價

- 日本의 關稅率은 동경라운드 및 최근의 市場開放 措置 등에 의하여 상당히 낮은 水準에 와 있음.
 - 工產品 平均 關稅率은 美國·EC 보다 낮음.
- 그러나 一部 分野에 있어서는 關稅가 여전히 중요한 보호수단으로서의 機能을 遂行
 - 大部分의 農產物은 상대적으로 高關稅를 維持하고 있으며 대다수 先進國에 비하여 讓許品目도 적은 편임
 - 輸入쿼터등 非關稅措置 廢止時에도 關稅率 引上 또는 割當關稅 등으로 대체수단 강구
 - 農產物·工產品 모두 많은 分野에 있어 Tariff escalation 存在
- 日本은 輸入被害 救濟制度의 活用度가 낮음.
 - 이는 貿易政策의 촛점이 輸入보다는 輸出쪽에 集中되어 온 經濟發展 背景을 反映